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
----------	---

2022. 7.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7. 8. 강남구청장

나. 상정의결

- 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2. 7. 25.)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조례의 명칭과 실무명칭을 현행화하고, 동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 설명 및 현장통제 관련 강화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강남구”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변경(안 제1조)

나. 제4조제1항 중 “「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 조례」 제21조”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 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강남구”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수정(안 제4조)

다. 제4조제4항 중 “현장지원반장” 을 “상황총괄반장” 으로 수정(안 제4조)

라. 제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안 제7조)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 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마. 제19조 제2항 중 “따라야” 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로 한다.(안 제19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¹⁾’발생으로 인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1) 2021년 6월 9일 16시 23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임. 사고로 인해 사망자9명 및 부상자8명이라는 인적 피해를 입음.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서울특별시를 통해 하달한 바, 집행부는 이를 참조하여 주요 인사 현장 방문시 안내와 브리핑 업무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업무로 추가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통한 현장통제 관련 강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

2 조례안의 개정 내용 및 평가

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개념

- 재난관리란 다양한 재난요소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 시키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복구를 돕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상 재난관리의 과정은 4단계인 ① 예방 단계 ② 대비단계 ③ 대응단계 ④ 복구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재난관리의 예방수습복구의 과정들은 서로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 ① 예방단계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의 기회를 줄이며, 피할 수 없는 재해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말하고, ② 재난대비단계는 재난에 대한 예방단계의 제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체제를 갖추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③ 대응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고,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계를 말하고, ④ 복구단계는 급한 재난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에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는 단계를 말함.

- 법에 따른 ‘안전관리’ 는 기본적으로 위험억제 내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되며, 인간이 갖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활동 전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재난관리보다는 안전관리가 재난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법은 크게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2장(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은 주로 안전과 관련되는 기구를 정하고 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제9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제10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제12조의 2) 등의 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제25조의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제27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의 2), 재난안전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정부합동안전점검(제32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34조의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 6), 재난대비훈련(제35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그외에 제9장 보칙에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제69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재난대응과 복구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2장 제2절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4조), 수습지원단 파견 등(제14조의2),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제15조의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제16조),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명시하였음.

재난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재난사태 선포(제36조), 응급조치(제37조),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제38조의2), 동원명령 등(제39조), 대피명령(제40조),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강제대피조치(제42조), 통행제한(제43조), 응원(제44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49조), 긴급구조(제51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6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등(제57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재난의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재난피해신고 및 조사(제58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제60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61조), 비용부담의 원칙(제62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제63조), 손실보상(제64조), 치료 및 보상(제65조), 재난지역에 국가보조 등의 지원(제66조) 등 재난복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 통합지원본부는 재난의 대응을 위해 자치구가 설치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업무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맡는 구조임²⁾.

2) 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

나. 통합지원본부 업무 추가(안 제7조)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략)</p> <p>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p> <p>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p>
<p>7.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p>

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통합지원본부 피해자 가족면담 업무 추가(안 제7조제4항제6호)

- 개정안은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 가족 면담 창구를 통합지원본부로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의 혼란과 불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면담’ 업무를 추가하였음.
-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상황과 피해자 구제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내용으로 사료됨.
- 검토하건데 재난 발생시에 재난관리를 위해 설치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의무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민감한 일반국민이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상세한 피해상황의 보고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대응외에 별도의 피해 가족면담 업무를 추가한 점은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 설치법」 제28조의2에서 ‘위원회는 사고 등 조사의 실시에 임하여서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심정을 충분 배려하면서 이들에 대한 당해사고 등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 있다고 보임.

2)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안내 및 브리핑(안 제16조제4항제7호 및 제5항)

- 개정안은 주요인사가 재난현장에 방문한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안내와 브리핑을 하도록 업무를 추가하였고(안 제7조제4항제7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중앙부처 주요인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고, 그 밖의 주요인사는 통합지원본부가 담당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었음.(안 제7조제5항)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구조와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상급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현장 안내와 브리핑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시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안내에 관한 공문상에도 ‘광주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시 재난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선 재난현장에서는 주요인사가 방문할 때 현장 안내 등에 대한 업무 소관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현장안내 등을 위해 명확히 소관기구를 정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음.

-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광주철거건축물붕괴사고 현장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현장 안내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재난 수급 과정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바,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기에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주요인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개념인 바, 주요인사의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이나, 그와 관련된 정의개념을 찾기가 어려우며, 주요인사가 방문한 경우 현장안내와 브리핑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안내하고 브리핑할 것인지는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부의 재량 판단에 맡기는 편이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임.
 - 또한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규정한 현행조례 제7조제4항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예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주요인사’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은 체계상 부합하지 않다고 보임.
 - 그 외에도 주요인사에 대한 ‘브리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검토하건데 조례는 기본적으로 행정주체인 집행부와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주민도 인지해야 할 주요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고 반면에, 개정안과 같이 ‘주요인사’가 방문했을 때의 사무처리요령과 방법 등은 행정 내부업무에 국한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규칙³⁾에서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예: 사무분장규정, 사무처리규정,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다.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제권한 명시(안 제19조제2항)

<표>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u>따라야 한다.</u>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

- 개정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⁴⁾에게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을 통제해야 할 의무 이외에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검토하건데 재난현장에서의 통제권한이라 함은 재난발생시 긴급구조활동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재난발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현장통제 유지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겠음.
- 그러므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 조례의 ‘재난현장 통제’의 범위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일 수 있으며, 법⁵⁾에 의하여 광범위한 통제권한이 이미 부여되어 있

4) 법 제3조(정의규정)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집행부는 법 시행령⁶⁾에 따라 현장지휘체계를 지역대책본부장(구청장)이 승계한 뒤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의 직접 관련성 없는 자를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법 시행령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 조례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직접 관련성 없는 자를 출입통제 함’에 있어서 재난현장 통제범위에 대한 필요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조례상 규정을 통해 통제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또한 현장지휘체계를 지역대책본부장이 승계한 후에 다른 요건이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현장에 직접 관련성 없는 자를 출입통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 근거도 부재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⁷⁾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초과침익조례⁸⁾로서 평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음.

라.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입법상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3 조례안 검토 결론

- 금번 조례안은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시 재난대응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입법상의 오기 등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재난사고로 인해 불안과 혼란에 빠진 피해자 가족을 위해 면담 업무를 통합지원본부로 일원화하여 명시함은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임.
- 그러나 주요인사가 현장 방문시에 안내 및 브리핑을 명시한 개정안을 보면, 주요인사에 대한 안내 및 브리핑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주요인사의 범위 ② 주요인사에 대한 안내 및 브리핑을 명시해야 할 사유 및 배경 ③ 주요

7)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8) 초과침익조례: 상위 규범인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를 정하는 조례로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례가 적용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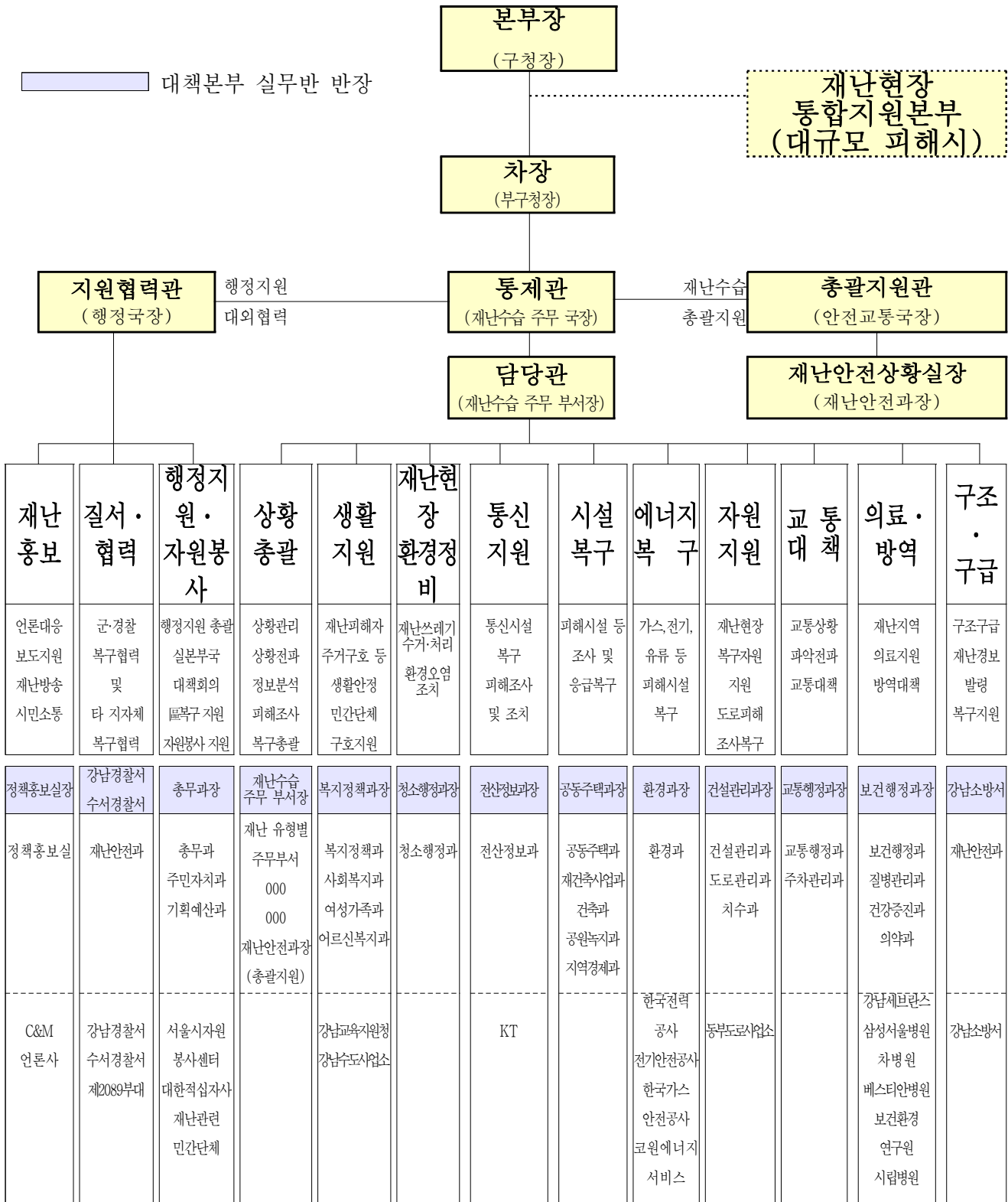
인사에 대한 안내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재난 대응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관련된 규정은 행정규칙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주요 인사에 대한 안내 및 브리핑이 재난 대응 차원에 필요하다기 보다는 행정 위계 질서에서 발생한 불편함 때문이라면, 중앙정부의 권위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임.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주요인사에 대한 안내 등의 과정에 어떤 오류와 장애요인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위치에 있으며 행정력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표준안을 통해 조례안 개정을 권고함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위 행정기관으로 간주하는 고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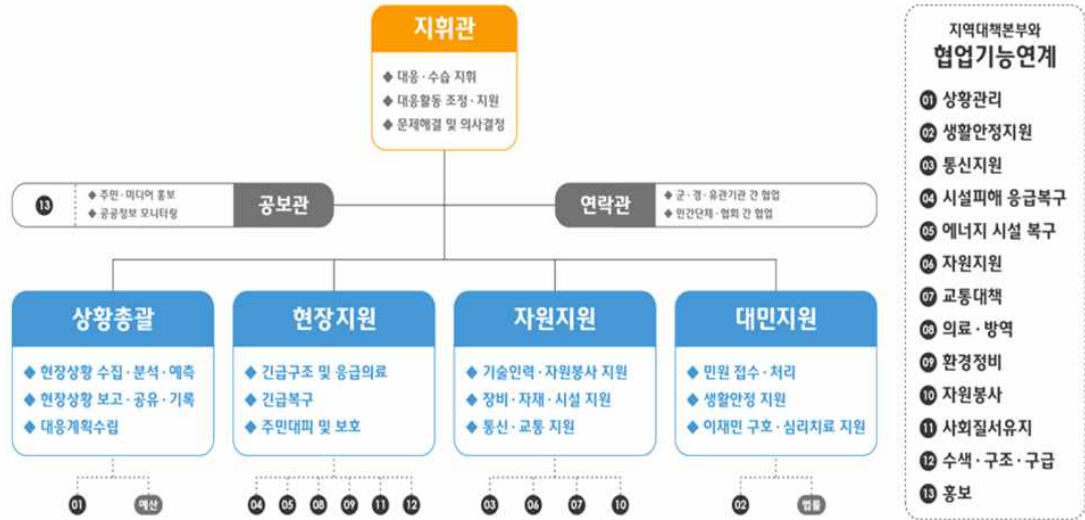
○ 또한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통제권한을 명시하는 내용도 조례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있어서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자에 대한 출입금지 통제조치에 대한 필요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행정규칙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3.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연월일 : 2022. 7. 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재난안전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조례의 명칭과 실무명칭을 현행화하고, 동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 설명 및 현장통제 관련 강화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조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변경(안 제1조)
- 나. 제4조제1항 중 “「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 조례」 제21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수정(안 제4조)

다. 제4조제4항 중 “현장지원반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수정
(안 제4조)

라. 제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안 제7조)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
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
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마. 제19조 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
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로 한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03.18. ~ 2022.04.0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조례」 제21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현장지원반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남구</u>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강남구</u> ----- ----- ----- ----- ----- ----- ----- ----- -----.</p>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p> <p>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u>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조례</u>」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p>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p> <p>① ----- 「<u>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u>」 제21조-----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③ ----- ----- -----</p>

• 운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강남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지원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략)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신 설>

7. (생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④ -----
----- 상황총괄반장 ---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

양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재난안전과 직급 방재7급 성명 강신욱 (02-3423-6945)